

지방보조금(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센티브) 지원계획 공고

「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6월 1일

제주특별자치도지사

1. 신청자격

-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

< 보조금 지원 부적격 단체 >

-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
-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
-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(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)

2. 지원 대상 및 내용

- 지원대상: 도내 소재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중소기업

사업명	지원규모	사업추진 기간	접수·문의처
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 사업 (보조 100%)	20,000천원 * 사업장 당 최대 5백만원	2023.8.1.~11.30	제주도청 안전정책과 (710-2564)

- 지원내용: 노동환경개선 자금 지원(업체당 최대 5백만 원)
 - 용도: 시설개선(휴게여건 개선 등), 안전장비 구입 등

구분	지원범위
시설개선	노후 작업장·휴게 공간·화장실 개보수 등
안전장비	안전장비(보호구, 측정장비, 구조장비) 구입 등
근로여건 개선	휴게시설 비품(환풍기, 생활가전-냉장고, 전자레인지, 세탁기, 냉온풍기, 정수기) 구입 등

※ 환경개선 분야와 관련이 없거나 운영비(임차료, 단순 소모품 구입 등) 지원 불가

3. 신청 및 접수

가. 신청기간 : 2023. 6. 1. ~ 6. 30. (근무시간 내)

나. 신청방법 : 방문 또는 등기우편(마감일 18:00 도착분까지 유효)

[주소: (우 63122)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(연동), 제주특별자치도청 안전정책과 '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사업 담당자' 앞]

다. 접수장소 :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정책과(제주시 문연로 6, 제주도청 제1청사 별관)

라. 신청서류(붙임 2)

- 1) 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.
- 2) 사업계획서 1부.
- 3) 단체(기업)소개서 1부.
- 4) 사업장등록증 사본 1부.
- 5)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(2022.12월분) 1부.(국세청홈택스 다운로드)
- 6)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.
- 7) 중소기업 확인서 1부.(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다운로드)
- 8)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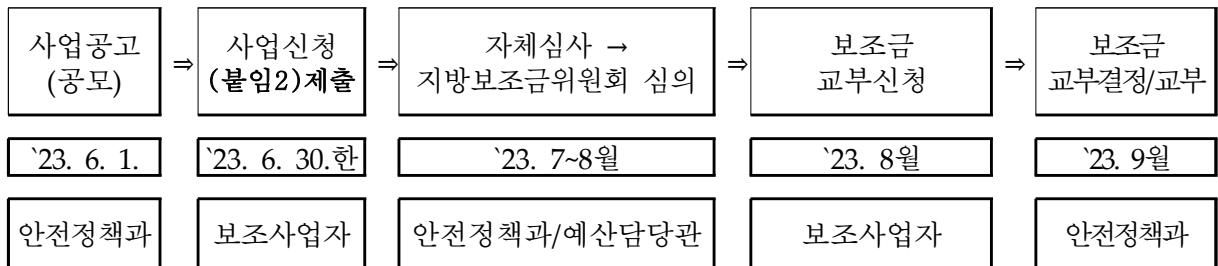
« 평가자료 »

- 9) 안전관리계획 사본 1부('23년)[붙임 1 작성]
- 10) 사업장 유해·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활동 자료 1부('22년 또는 '23년)
- 11) 근로자 건강검진 이수 증빙자료 1부('22년)
- 12) 산재요양승인/반려확인서 1부(근로복지공단 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)('20년~'23년)
- 13) 우수 안전·보건 활동 사례 1부(가점)('22년 또는 '23년)
- 14) 안전·보건관련 국가자격증 사본 1부(가점)('22년 또는 '23년)

마. 문의처 : 안전정책과 ☎ 064) 710-2564

4.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

- 안전정책과 자체 심사(1차)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(2차)를 거쳐 결정 (결과 개별통보)



- 심사기준

구 분	배점	평가지표	평가점수
안전보건관리 (50)	20	안전관리계획의 완성도	0~20점
	15	사업장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활동 시행도 (위험성 평가)	0~15점
	15	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유무	0~15점
무재해 (산업재해 발생 유무)	20	무상해사고(시설물 손상) 유무	0~10점

		3일 이상 휴업 유무(부상/질병)	0~10점
교육참여도	10	구성원의 법정필수교육 이수	0~10점
재해예방 예산 편성·집행	10	예산계획 수립 유무	0~5점
사업계획의 완성도	10	사업계획의 현실성·구체성·효과성	0~10점
(가점)	5	우수 안전·보건 활동 사례	최대 5점
	5	안전 또는 보건관리자 선임 여부	최대 5점
총점	100점 (※평가 결과 60점 미만으로서 요건 불충족인 업체는 선정 불가)		

< 유 의 사 항 >

1.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

- 교부신청서 제출(신청자 명칭, 주소,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,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, 자부담액, 보조사업기간,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)
- 사업계획서 제출(사업개요,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, 보조사업 수행 계획,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,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, 보조사업 효과,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,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)
- 보조금 자부담통장(계좌) 등 사본 제출 :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,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
-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

2. 보조사업의 수행

- 보조금의 용도의 사용금지
-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
-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
-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
-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

3.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

-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,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
-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
-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반기별 보고
-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받아야 함
- 지방보조금 총액이 10억 이상인 특정보조사업자는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제출

4.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

-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
-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
-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부과
- 법령,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
-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보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

5. 기타사항

-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
-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
-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,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, 기타사항은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
- 궁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정책과(☎064-710-2564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서식 1

안전관리계획

※ 사업의 특성에 따라 서식 변경 가능

1 사업장 개요

회 사 명			대 표 자			
소 재 지 (연락처)						
최근 3년간 재해현황	2020년		2021년		2022년	
	재해자수	사망자수	재해자수	사망자수	재해자수	사망자수

2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

□ 안전보건 전문인력 등 배치표 및 담당업무

직 책	성 명	담당업무	비 고
안전 관리자 (산안법 제17조)	○○○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도는 안전·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·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.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·조언 3.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·조언 4.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·조언 5. 사업장 순회점검, 지도 및 조치 건의 6.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·분석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·조언 7.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·관리·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·조언 8. 법 또는 법에 다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·조언 9.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·유지 10.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농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	

직 책	성 명	담당업무	비 고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보건 관리자 (산안법 제18조)</p>	○○○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·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.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등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·조언 3.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·조언 4.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·조언 5.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직의 직무 6.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그이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·조언 7.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,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, 부상·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,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, 위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에 해당하는 의료행위(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간호사인 경우에 한함) 8.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·조언 9. 사업장 순회점검·지도 및 조치의 건의 10.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·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·조언 11. 산업재해 통계의 유지·관리·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·조언 12.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·조언 13.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·유지 14.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	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안전보건 관리 담당자 (산안법 제19조)</p>	○○○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·조언 2.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·조언 3.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·조언 4.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지도·조언 5.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,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를 위한 보좌 및 지도·조언 6. 산업안전·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·조언 	

□ 조직도

대표이사()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감소계획 추진 종결 ◆ 방침, 목표 수립, 공표 ◆ 현장 안전보건점검 ◆ 안전보건교육 참석 		
현장 PM()	총무팀장()	안전담당(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담당 현장 점검지원 ◆ 담당 현장 교육지원 ◆ 담당 현장 점검사항 개선여부 확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안전관리비 예산 지원 ◆ 우수협력업체 포상 ◆ 외부기관 선정 지원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감소계획 이행 관리 ◆ 교육교재 및 교안 개발 ◆ 현장 점검 지원 ◆ 점검 개선여부 확인 ◆ 산업재해 관리 등

3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

□ 안전보건 목표 및 추진계획

목표/세부계획	추진일정				목표	예산 (만원)	달성률 (%)	실적/부진사유
	1 분기	2 분기	3 분기	4 분기				
정기 위험성평가	계획	○			1회/년 이상	200		
	실적							
수시 위험성평가	계획	○	○	○	○	수시		
	실적							
고위험 개선	계획	○	○	○	○	개선 이행		
	실적							
아차 사고 수집	계획	○	○	○	○	1건/월		
	실적							
산업안전보건 위원회	계획	○	○	○	○	1회/월		
	실적							
합동안전평가	계획	○	○	○	○	1회/분기		
	실적							
비상조치훈련	계획	○	○	○	○	1회/분기 (화재, 누출, 대피, 구조)	20	
	실적							
작업허가서 발부	계획	○	○	○	○	단위 작업별		
	실적							

목표/세부계획		추진일정				목표	예산 (만원)	달성률 (%)	실적/부진사유
		1 분기	2 분기	3 분기	4 분기				
작업 전 미팅실시	계획	○	○	○	○	당위 작업별			
	실적								
안전보건 예산 집행	계획	○	○	○	○	안전보건 집행			
	실적								
성과측정 및 모니터링	계획		○		○	1회/반기			
	실적								
시정조치 이행	계획	○	○	○	○	수시			
	실적								
경영자 검토	계획		○		○	1회/반기			
	실적								

4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실적(*실적은 증빙 별도 첨부 필요)

연간 교육계획

NO	교육구분			교육 과 정	일 정												대상 인원 (인)	교육 방법 (내·외부)
	안전 보건	공정 안전	수급 업체	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		
1	○			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		○		○		○		○		○		○	10명	집체 (내부)
2	○			신규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						○							발생 시	집체 (내부)
3	○			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					○								9명	집체 (외부)
4	○			특별 안전보건교육						○							5명	집체 (내부)
5	○			비상사태대비 교육 및 훈련					○					○			전직원	집체 (내부)
6	○			물질안전보건 교육						○							2명	집체 (내부)
7		○		공정위험성평가 교육													10명	집체 (외부)
8			○	작업내용 변경자 교육						○							발생시	집체 (내부)

5 사용 기계·기구 및 설비의 종류

순번	기계·기구·설비명 (관리번호)	용량	단위 작업 장소	수량	검사대상	점검주 기	발생가능 재해형태
1	프레스(P-1)	10톤	작업장(1)	2	산업법 안전검사	3개월	끼임
2	프레스(P-5)	30톤	작업장(2)	2	산업법 안전검사	3개월	끼임
3	지게차(A-1, 2)	5톤	외부	3	건설기계 관리법검사	1개월	부딪힘, 넘어짐
4	크레인(C-1,2,3)	20톤	외부	3	산업법 안전검사	3개월	부딪힘, 끼임
5	크레인(C-4,5)	10톤	외부	2	산업법 안전검사	3개월	부딪힘, 끼임

6 유해·위험물질 목록

화학 물질	CAS No	분자식	폭발한계(%)		노기 출 준	인 화 점 (°C)	발 화 점 (°C)	증기압 (20°C, mmHg)	부식성 유무	이상 반응 유무	일일 사용 량	저장 량	비 고
			하한	상한									
메틸 알코올	67-56	CH3 OH	5.5	44	200ppm	9.7	464	127	×	고인화성, 자극성, 부식성, 독성가스	0.2 m ³	1m ³	

7 작업자 자격·이력·경력현황

작업자 자격·이력·경력

순번	자격	취득일	이 력	실 적	경력 구분
1	철골구조물기능사	2019. 10. 1.	2019. 12월 ~ 2020. 8월(○○회사) 2021. 2월 ~ 현재	○○ 현장	경력
2	승강기기능사	2020. 1. 15.	2022. 3월 ~ 현재		신규
3	비계기능사	2021. 2. 20.	2021. 3월 ~ 2021. 10월(○○건설) 2022. 2월 ~ 현재	○○ 현장	경력

안전·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

본인은 귀 기관의 ○○○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.

「산업안전보건법, 중대재해처벌법」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.

: 예 ()

: 아니오 ()

○○○(업체명)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,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·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.

2023년 월 일

주 소 :

기 관 명 :

대 표 자 : (서명 또는 인)

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

서식 2

지방보조사업 신청서식

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

신청인	단체명 (법인명)		사업자 등록번호(선택)		
	소재지		상시근로자 수		
	대표자	성명	주민등록번호(선택)		
		주소	연락처	사무실	핸드폰
신청내용	사업명				
	사업내용				
	사업기간				
	사업비		보조금	천원(%)	
			자부담	천원(%)	
	동일사업 3년간 보조금 받은 금액(천원)		2020년	2021년	2022년
첨부서류		1. 단체소개서 1부, 2. 사업계획서 1부			
<p>「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지방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신청인 : (직인)</p> <p>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</p>					
<p>○ 개인정보 수집·이용동의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수집 항목 : 주민(법인)번호, 이름, 연락처(휴대폰번호), 주소 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목적 : 보조금 지원 대상 확인 등(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포함) - 보관·이용기간 : 해당보조사업 지원 서류 보관기간 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를 거부할수 있습니다. 단,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-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습니다. 상기에 관한 설명을 모두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. <input type="checkbox"/> (체크) <p>※ 지방세 체납 확인을 위해 법인번호 또는 주민번호 기재(선택사항) 필요(단체의 경우 대표자 기재)</p>					

사업계획서

사업개요

- 사업명 :
- 사업기간 :
- 사업내용 :

- 경비총액 : 천원(보조율 %)
- 보조금액 : 천원
- 자부담액 : 천원

보조사업 수행계획 (단위 : 천원)

추진시기	세부 사업내용	비고
	<p>사업비가 투입되는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작성 (예시. 위험성 평가 컨설팅: 인건비, 기술료)</p>	

보조사업의 효과

-
-

□ 사업비 집행계획

※ 산출내역이 불분명할 경우 심의제외

가. 지방보조금 집행계획(구체적으로 작성)

①사업내용(단위사업명)	②예산비목	③금액(천원)	④산출내역(기초)
계			
해안변 환경정비	재료비 홍보비	500 630	· 장갑 500원×100개×10회 = 500천원 · 현수막 70,000원×3개×3회=630천원 ※1식*10,000천원 = 10,000천원(X) → 1식과 같이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표현 금지

나. 자부담 집행계획(구체적으로 작성)

①사업내용(단위사업명)	②예산비목	③금액(천원)	④산출내역(기초)
계			
<작성예시> 해안변 환경정비	재료비 홍보비	500 630	· 장갑 500원×100개×10회 = 500천원 · 현수막 70,000원×3개×3회=630천원 ※1식*10,000천원 = 10,000천원(X) → 1식과 같이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표현 금지

<작성요령>

- ① 사업내용 : 단위(세부)사업명을 기재
- ② 예산비목 : 홍보비, 인쇄비, 강사료, 교통비, 식비, 임차료 등으로 구분
- ③ 금 액 : 천원 단위로 작성(산출기초의 원단위 절상)
- ④ 산출내역(기초) :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
 - 세목 기재방법 : 단가(원)×회(명, 부 등) = ○ ○ ○ 천원
 - 산출내역(기초)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설명자료 첨부

단 체(기 업) 소 개 서

[단체명 : _____]

주소 및 연 락 처	주 소	(우 123-456)		
	연 락 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전화 : • 팩스 :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홈페이지 : • E-Mail : 	
등록 및 인력현황	등록기관		등 록 일	
	대 표 자	(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무국 직원수 : 명 (사무국장, 행정부장, ..) 	
	상시근로자 수			
설립목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우리 사회의 ○○○○와 균형있는 ○○○○을 실현하기 위한 ○○○○을 전개함으로써 ○○○○○○ 기틀 마련 ※ 첨부 :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			
단체연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'81.11. 8 ○○○○ 설립(창립) • '88. 6.15 ○○○○ 사단법인 설립허가 • '99. 7.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			
예산현황 (당해년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예산총액 : 천원(보조금 : 천원, 자체수입 : 천원) • 재원구성(100%) : 회비수입(%), 기부금 및 모금활동(%),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(%), 사업수익(%), 기타(%) 			
주요사업 (최근1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“정관/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” • 2~3건 작성 • 별지작성 가능 			
주요사업 계 획 (당해년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2~3건 작성 • 별지작성 가능 • 			

2022년도 「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 사업」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

1. 기업 및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동의

동의함 동의하지 않음

- 상기 기업 및 개인은 「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 사업」에 개인 및 기업(신용)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 - 수집·이용목적: 사업 신청자 선정 및 지원, 기업 및 개인의 적법·적정성 평가를 위한 관리
 - 수집 개인정보의 항목: 성명(기업명), 연락처(휴대폰번호), 주소, 사업자등록번호, 생년월일(주민등록번호) 등
 - 수집·이용기간: 수집·이용 동의일로부터 해당보조사업 지원 서류 보관기간까지
 - 이용범위: 행정목적 달성 및 사업진행을 위한 정보 제공
- ※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지원 사업 신청이 제한됩니다.

2.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

동의함 동의하지 않음

- 고유식별정보: 생년월일(주민등록번호), 사업자번호
 - 수집·이용목적 및 보유 이용기간: 기업 및 개인정보의 수입·이용에 관한 동의 내용과 동일
- ※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지원 사업 신청이 제한됩니다.

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.

2023년 월 일

기 업 명 :

대 표 자 :

(서명 또는 날인)

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